

2026/27

이용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최근 법령 신설, 개정 내용 반영
- ★ 27분 완성

도서명 : 이용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

ISBN : 979-11-7393-322-6

발간일 : 2026-08-03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5,000원



이용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절 총칙(p4)

제2절 공중위생영업(p9)

제3절 이용사 및 미용사(p19)

제4절 감독 등(p26)

제5절 보칙(p45)

제6절 벌칙(p47~51)

[약어]

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군의 구청장

부령은 보건복지부령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절 총칙

1조, 2조

1. 목적

-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 규정

-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

2. 정의

-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세탁업,

건물위생관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 세분 가능

가.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 대상

위생관리서비스 제공

-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

건물위생관리업

나.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

있도록 시설, 설비등 서비스 제공

1) 세분

- 숙박업(일반)은 취사시설 제외
- 숙박업(생활)은 취사시설 포함

2)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

-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
- 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시설
- 청소년수련시설
-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,
한옥체험업용 시설

다. 목욕장업

1) 손님에 다음 서비스 제공

- 물로 목욕하는 시설/설비(이하 목욕시설)
- 맥반석/황토/옥 등을 직/간접 가열해
발생되는 열기, 원적외선 등을 이용해 땀을

내는 시설/설비(이하 땀내는 시설)

2) 다음은 제외

-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
-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
-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

라.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,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 용모를 단정하게 함

마.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, 머리, 피부, 손톱/발톱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밈

1) **일반미용업**

- 파마, 머리카락자르기, 머리카락모양내기, 머리피부손질, 머리카락염색, 머리감기,

의료기기/의약품 사용 않는 눈썹손질

2) 피부미용업

- 의료기기/의약품을 사용 않는 피부상태분석,
피부관리, 제모, 눈썹손질

3) 네일미용업

- 손톱, 발톱 손질/화장

4) 화장/분장 미용업

- 얼굴 등 신체 화장/분장, 의료기기/의약품
사용 않는 눈썹손질

5) 대통령령상 세부 영업(현재 정하지 않음)

6) 종합미용업

- 상기 업무 모두 함

바. 세탁업은 의류, 섬유제품, 피혁제품등 세탁

사.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
건축물, 시설물등 청결유지, 실내공기정화 위한
청소등 대행

제2절 공중위생영업

3~5조

1.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

가. 공중위생영업 하려면 공중위생영업
종류별로 부령상 시설/설비를 갖추고
시군구에 신고 요

- 다음의 중요사항 변경시도 같다

- 1) 영업소 명칭(상호)
- 2) 영업소 주소
- 3) 신고한 영업장 면적 1/3 이상 증감
- 건물 일부 대상 숙박업 영업신고 한 때 1/3 미만 증감도 포함
- 4) 대표자 성명, 생년월일
- 5) 숙박업 업종 간 변경
- 6) 미용업 업종 간 변경, 업종 추가

나. 시설/설비 일반기준

- 1)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/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될 것
- 2) 예외